

	<b>안전.보건관리 PROCESS</b>	문서번호	VSMP3-1
	안전,보건관리 규정		개정일자 2023.04.03
		개정번호 3	폐이지 1 / 14

## ■ 목 차 ■

- |    |                   |   |
|----|-------------------|---|
| 1. | 목적 및 적용범위 .....   | 2 |
| 2. | 용어 정의 .....       | 2 |
| 3. | 책임과 권한 .....      | 2 |
| 4. | 적격성 기준 .....      | 2 |
| 5. | 업무절차 .....        | 3 |
| 6. | 관련양식 및 기록관리 ..... | 4 |
| 7. | 관련규정 및 지침서 .....  | 4 |

3	2023.04.03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및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내용 변경에 따른 개정
2	2023.01.31	ISO 9001:2015/ISO 14001:2015/ISO 45001:2018 조직, 직급명 변경에 따른 개정
1	2021.03.02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자격요건 수정
0	2019.12.31	ISO 45001:2018 통합경영시스템 구축으로 신규 제정
<b>개정번호</b>	<b>개정일자</b>	<b>개정사유 및 개정내용</b>
배포처	<input type="checkbox"/> 경영지원본부 (원본:관리본 1/1)	

	<b>안전.보건관리 PROCESS</b>	문서번호	VSMP3-1
	안전,보건관리 규정	개정일자	2023.04.03
		개정번호	3
		폐 이 지	2 / 14

## 1. 목적 및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 및 증진하기 위한 기준 및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고, 당사의 재산보전을 도모하며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으로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당사에서 근무하는 전 근로자에게 적용하며, 당사의 사업장을 출입하는 협력업체 인원을 포함한 모든 방문객에게 적용한다.

## 2. 용어 정의

### 2.1 산업재해

근로자가 업무에 관련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이 발생되는 것을 말한다.

### 2.2 안전

사고의 위험이나 위해 요인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 2.3 사고

불안전한 상태 또는 행동에 기인되어 근로자의 인명에 사상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피해를 초래한 비정상적, 비능률적인 것으로써 계획되지 않은 사건을 말한다.

### 2.4 안전관리

사업장내에 사고의 위험이 없도록 사전에 위험요인을 제거하여 무재해 사업장을 유지시키는 것을 말하며, 사고 발생시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에 노력하는 행위를 말한다.

### 2.5 보건관리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고, 노동력의 확보를 기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건강에 해가 되는 각종 조건을 제거함으로써 쾌적한 근무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 2.6 재해

사고의 최종 결과로써 인명 및 재산상 피해를 말한다.

### 2.7 중대재해

- (1)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 (2)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 (3) 부상자 또는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 2.8 불안전한 행동

보편적으로 인정된 정상적, 능률적인 절차 또는 관례에 벗어나는 행동 즉, 위험에 노출 되거나 안전성을 저해하는 행동을 말한다.

### 2.9 불안전한 상태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물리적 또는 기계적 상태 조건을 말한다.

### 2.10 근로자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2.11 사업주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 2.12 작업환경측정

작업환경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측정계획을 수립하여 시료의 채취, 분석 및 평가를 하는 것을 말한다.

### 2.13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경우 대표이사가 지명하며 사업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관리 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 2.14 관리 감독자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하여 당해 업무와 소속 근로자, 방문객, 협력업체를 지휘감독하며 해당 작업장과 근로자에 대해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2.15 안전/보건관리자

	<b>안전.보건관리 PROCESS</b>	문서번호	VSMP3-1
	안전,보건관리 규정		개정일자 2023.04.03
		개정번호 3	폐 이 지 3 / 14

동일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를 보좌하고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자를 말한다(외부 기관에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을 안전관리자로 본다).

### 3. 책임과 권한

#### 3.1 대표이사

- 1)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서 당사 안전보건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총괄.

#### 3.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1) 안전보건관리 전반에 관한 업무계획 수립 및 총괄
- 2) 안전보건관리 기준, 규정, 수칙의 제정 및 이해여부 확인 감독
- 3) 안전점검 계획, 안전보건 교육, 훈련계획의 수립 및 시행
- 4) 안전사고의 조사, 원인분석, 예방책의 수립, 기록유지 및 보고
- 5) 설비의 안전장치 및 보호구의 선정
- 6)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운영
- 7) 산재보험의 적용, 요양 및 보상 관리 주관
- 8) 안전의식 고취 및 위한 홍보, 행사 및 포상계획
- 9) 근로자 보건위생관리 및 작업환경 개선업무
- 10) 작업환경측정 및 근로자 건강검진을 주관
- 11) 안전/보건 전반에 걸친 업무 진행
- 12) 안전/보건업무를 위탁하였을 시는 내부 업무담당자로 본다.

#### 3.3 관리감독자(센터장/소장)

- 1) 유해위험설비에 대한 자체점검 실시 및 방호장치 유지관리
- 2) 전보호구 착용 및 소방시설 유지관리
- 3) 재해예방을 위한 사전 안전조치 및 재해 발생시 긴급조치
- 4)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훈련의 실시
- 5) 안전보건관리 기준, 규정, 수칙의 이행상태를 확인
- 6) 안전작업 표준의 작성 또는 지원 및 이행여부 확인
- 7) 관할 부문의 기계기구, 설비 등의 개선계획의 결정 및 점검, 정비상황 확인
- 8) 협력업체 및 하도급업체의 작업통제
- 9)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 10) 작업내용별 안전보건관리 업무의 실천 및 무재해 운동(작업 전 후 위험예지 훈련)의 추진
- 11) 기계설비 및 작업내용별 불안전 개소의 개선조치 및 정리정돈의 실시
- 12) 소속인원에 대한 앗차사고 사례 및 안전작업 방법 전파
- 13) 재해 발생시 응급조치, 현장보존, 재해보고서 작성 제출
- 14) 안전장치, 보호구의 일상 점검정비 및 적정사용 확인 감독

#### 3.4 근로자

- 1) 본 규정 및 기타 제반 안전사항의 준수
- 2) 당사가 실시하는 산업재해 방지조치 및 안전보건활동에 협력

#### 3.5 안전관리자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 하는 업무를 수행

#### 3.6 보건관리자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 하는 업무를 수행

	안전.보건관리 PROCESS	문서번호	VSMP3-1
		개정일자	2023.04.03
	안전,보건관리 규정	개정번호	3
		폐 이 지	4 / 14

#### 4. 적격성 기준

No	업무내용	업무 수행자 적격성 기준			
1	프로세스 운영	학 력	고졸 이상	숙련도	해당없음
		교육훈련	안전보건 업무를 포함한 QSMS 규정에 대한 교육 8시간 이상 이수자		
		업무경력	당사 또는 동종 업계의 업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2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자격기준	해당 사업을 총괄하는 사람으로 대표이사가 지정한 자		
3	관리감독자	자격기준	각 현장의 소장 및 센터장		
4	안전관리자	자격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4조의 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5	보건관리자	자격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의 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안전.보건관리 PROCESS	문서번호	VSMP3-1
	안전,보건관리 규정	개정일자	2023.04.03
		개정번호	3
		폐 이 지	5 / 14

## 5. 안전.보건관리 업무 FLOW

### 5.1 안전보건업무의 우선

사업장의 모든 작업 및 관리에 있어 안전제일을 원칙으로 하며 각종 사고방지를 위하여 예산, 인력, 제도 면에서 안전보건 업무를 우선적으로 한다.

### 5.2 사고예방책임과 의무

사업장의 모든 임직원은 자기가 관리하는 인원, 시설물, 장비, 물자 및 작업환경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의 책임이 있으며 법령과 이 규정이 정하는 안전과 보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5.3 사업장의 근로자와 협력업체의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과 이 규정이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장 또는 관련단체에서 실시하는 재해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 5.4 안전보건 표식의 부착의무

5.4.1 사업장은 사업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 시 조치의 안내, 기타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안전보건표식을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5.4.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착해야 할 표식의 종류 및 부착 장소는 작업 현장 별로 정하여 시행 한다.

### 5.5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해당시 운영)

#### 5.5.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1) 사업장은 제8조제2항의 각호의 사항 등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사용자 동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5.6 안전보건교육

#### 5.6.1 교육의 구분

5.6.1.1 안전보건교육은 교육실시 책임에 따라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과 직무교육으로 구분한다.

5.6.1.2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장 책임 하에 실시하는 교육으로 교육대상에 따라 신규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으로 구분한다.

5.6.1.3 직무교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선임된 사업장 내의 안전보건관계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내용에 대해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 5.6.2 교육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자는 매년 12월 중에 다음해의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5.6.3 책임

전 직원은 해당 직위와 직책에 따른 사내 안전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받을 의무와 권리가 있다.

#### 5.6.4 신규채용 시 교육

사업장에 신규로 채용된 직원에게 담당업무 종사 전 업무와 관련되는 안전·보건교육을 8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여야 한다.

#### 5.6.5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사업장 내 근무 중 작업내용을 변경하여 배치코자 할 경우, 변경업무 개시 전 수행할 업무와 관련되는 내용에 대해 2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5.6.6 특별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2”의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할 작업에 배치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배치 전 작업과 관련되는 내용에 대해 16시간이상의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5.6.7 정기교육

5.6.7.1 사업장 내 모든 소속 직원에게 분기별 6시간 이상의 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매일·매주 또는 격주 단위로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5.6.7.2 제1항의 정기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b>안전.보건관리 PROCESS</b>	문서번호	VSMP3-1
	안전,보건관리 규정		개정일자 2023.04.03
		개정번호 3	폐이지 6 / 14

- (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3)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4)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5)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5.6.8 관리감독자교육

5.6.8.1 관리감독자에게는 정기교육과 별도로 년16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6.8.2 제1항의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2) 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 (3)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4)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5)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6)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5.6.8.3 제1항의 정기교육은 교재, 강사 확보 상 (주)동성에서 자체적으로 실시가 곤란하므로 고용노동부장관 지정 관리감독자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년1회 16시간 집합교육으로 실시 할 수 있다.

5.6.8.4 3항에 의거 위탁교육 이수 시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실시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 5.6.9 교육실시 방법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때는 교육내용에 해당하는 교재, ppt, 동영상 등을 작성하여 실시 또는 시청각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 5.6.10 교육관계 서류 보존

교육 참가자 확인서명 자료 등 교육관계 서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5.6.11 직무교육대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위탁한 직무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1) 교육주기

-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선임 3개월 이내에 6시간의 신규교육과 신규교육 이수 후 매 2년 째 되는 날 전후 3개월 이내에 6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② 안전관리자는 선임 3개월 이내에 34시간의 신규교육을, 신규교육 이수 후 매 2년째 되는 날 전후 3 개월 이내에 24시간의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③ 보건관리자는 선임 3개월 이내에 34시간의 신규교육을, 신규교육 이수 후 매 2년째 되는 날 전후 3 개월 이내에 24시간의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 (2) 교육수강신청

교육담당자는 직무교육 대상자가 교육 주기 내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 5.7 안전관리

##### 5.7.1 안전보건관리 계획수립

안전보건담당자는 매년 12월 중 다음해의 안전보건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안전보건관리 계획은 전 부서에 통보하고 게시하여야 한다.

##### 5.7.2 안전보건 진단

5.7.2.1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에 의거 고용노동부 지방사무소로부터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받았을 경우 고용노동부지정 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진단을 받은 후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b>안전.보건관리 PROCESS</b>	문서번호	VSMP3-1
	안전,보건관리 규정		개정일자 2023.04.03
		개정번호 3	폐이지 7 / 14

5.7.2.1 사업장내의 모든 임직원은 제1항에의거 작성된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준수·이행하여야 한다.

#### 5.7.3 사전 인가

사업장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바에 따라 사전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행하여야 한다.

5.7.3.1 도급 시 사전 인가가 필요한 유해·위험 작업

5.7.3.2 사전 허가가 필요한 유해 물질 취급

5.7.3.3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 작업

#### 5.7.4 작업 중지

5.7.4.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행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5.7.4.2 근로자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직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직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7.4.3 모든 작업자는 제1항의 작업 중지 조치를 즉각 이행하여 재해예방 및 재해확산방지에 협조하여야 한다.

#### 5.7.5 안전점검 및 순찰의 책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각 부서 반장,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및 근무자 등 모든 계층의 책임자는 자기 소관 작업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함사항을 조기에 발견, 시정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점검 및 순찰계획을 수립·시행할 책임이 있다.

#### 5.7.6 안전점검 및 순찰의 종류와 시기

5.7.6.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무지 전반에 대하여 안전 상태를 점검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순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순찰의 월4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5.7.6.2 관리감독자는 관장하는 작업 전반에 관해 작업 시작 전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5.7.6.3 모든 근무자는 작업 전에 일상 안전점검 및 작업 후 정리정돈을 철저히 해야 한다.

5.7.6.4 새로운 기계, 기구를 도입하여 설치 후 시운전시 안전관리자의 입회하에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5.7.7 점검방법

점검자는 반드시 점검 기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유지 관리하되 점검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5.7.7.1 기계 장치의 청소 정비, 안전장치 부착 상태

5.7.7.2 유해 위험물, 생산원료 등의 취급, 적재, 보관 상태의 이상 유무

5.7.7.3 근로자의 작업 상태 및 작업수칙 이행 상태

5.7.7.4 보호구의 착용상태 및 안전수칙 이행 상태

5.7.7.5 정리정돈, 청소, 복장 및 지체 일상 점검 상태

5.7.7.6 기타 안전관리상 필요한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

#### 5.7.8 점검결과 조치

5.7.8.1 안전점검 결과는 안전보건팀장을 경유,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불안전한 상태가 있을 때에는 해당 부서장에게 시정 지시를 하고 해당 부서는 즉시 시정조치를 해야 하며 그 결과를 안전보건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7.8.2 보건관리자의 점검결과 보고서는 안전보건팀장이 접수하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b>안전.보건관리 PROCESS</b>	문서번호	VSMP3-1
	안전,보건관리 규정		개정일자 2023.04.03
		개정번호 3	폐 이 지 8 / 14

5.7.8.3 점검결과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당해 근로자에게 시정 지시를 하 고 작업자는 즉시 시정조치 해야 하며, 점검 주관자는 재해발생이 예상되는 급박한 사항을 발견 시는 현장에서 작업의 중지 또는 작업 방법의 변경, 인원의 대피를 명할 수 있다.

#### 5.7.9 안전기준

5.7.9.1 각 부서 담당은 사업장 내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기초로 하여 각종 기계 및 설비의 안전기준, 전기설비의 안전기준, 위험물 안전기준, 운반 작업의 안전기준 등을 별도로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5.7.9.2 전향의 안전보건기준은 산업안전보건기준 내용 중에서 당해 사업장에 실제 적용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사업장 실정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 5.7.10 표준안전작업 지침

5.7.10.1 모든 작업은 작업 별로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에 상응한 표준안전작업 지침을 작성하여 당해 작업부서의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

5.7.10.2 제1항의 표준안전작업 지침은 부서의 반장 책임하에 안전기준을 기초로 하여 과거 당해 작업에서 발생하였던 사고 및 재해를 고려하여 실천 가능한 내용으로 하여 작성한다.

5.7.10.3 작업자는 표준안전작업 지침에 의해 작업하도록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작업지침을 보완하고 해당 작업자에 대하여는 충분한 교육을 실시도록 한다.

- (1) 기계 설비의 신규 도입 또는 작업 시설을 변경할 때
- (2) 동일한 업무에서 안전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때
- (3) 기계·설비의 이상 발생으로 인한 수리·개조 등의 작업이 발생할 때

#### 5.7.11 안전수칙

5.7.11.1 사업장 내 작업간의 안전유지를 위해 작업자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에는 일반수칙과 특별 수칙으로 구분 한다

5.7.11.2 일반수칙은 전 작업장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안전수칙으로 안전보건팀장이 제정하여 사용 한다.

5.7.11.3 안전수칙은 당해 작업자 및 관련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하며 전 직원은 이를 숙지, 준수하여야 한다.

#### 5.7.12 위험물의 보관

5.7.12.1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는 당해 반장을 위험물 취급 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도록 해야 한다.

5.7.12.2 위험물질은 작업장과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에는 당일 작업에 필요한 양만큼 두어야 하고, 화기 기타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주 입 또는 가열하거나 증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7.12.3 위험물 보관 장소에는 화기물질의 휴대금지 및 관계 근로자 외 출입금지 조치를 해야 한다.

#### 5.7.13 자격 등에 의한 취업제한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으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작업에 있어서는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 외의 자를 당해 작업에 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5.8 보건관리

#### 5.8.1 건강진단의 구분

	안전.보건관리 PROCESS	문서번호	VSMP3-1
	안전,보건관리 규정	개정일자	2023.04.03
		개정번호	3
		폐 이 지	9 / 14

5.8.1.1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진단의 명을 받은 직원은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5.8.1.2 제1항의 건강진단의 종류에는 채용 시 건강진단,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으로 구분 한다.

#### 5.8.2 건강진단 실시방법

5.8.2.1 채용 시 건강진단은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 시 배치하기 전에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다만, 당해 연도 중에 다른 사업장에 채용되었다 사직 후 사업장에 입사하는 자가 전 사업장에서 받은 채용 시 건강진단 및 일반건강진단의 건강진단 개인표 또는 그 사본을 제출 시에는 생략할 수 있다.

5.8.2.2 일반건강진단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년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5.8.2.3 특수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에 해당하는 작업장 근무자를 대상으로 채용 시 당해 업무 배치전환 시 및 6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으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의 검사 항목에 따라 실시하며, 대상작업은 소음, 특정화학물질, 유기용제 취급자가 이에 해당 한다.

5.8.2.4 건강진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5.8.3 진단결과 조치

5.8.3.1 사업장은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건강진단 개인표를 송부 받은 때에는 직원에게 자체 없이 통보하고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지서식 건강진단결과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특수검진 대상에 따른 결과서는 관할지방 고용노동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8.3.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진단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의사의 관리 소견에 따라 당해 근로자의 작업전환, 취업금지, 근로시간의 단축 및 근무 중 치료 안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5.8.3.3 건강진단 개인표, 건강진단결과표, 건강진단을 증명하는 서류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5.8.4 질병자의 근로금지·제한

5.8.4.1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질병 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해야 한다.

- (1) 전염성 질환
- (2) 정신질환
- (3) 심장, 신장, 폐 등의 질환
- (4)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질환

5.8.4.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근로를 금지하거나 근로를 재개하도록 하는 때에는 미리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5.8.4.3 건강진단 결과 유해물질에 중독된 자는 당해 업무로 근로자의 건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해선 아니 된다.

#### 5.8.5 작업환경측정

##### 5.8.5.1 작업환경측정

- (1)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 노동부령이 정하는 작업장에 대해서는 측정주기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작업환경 측정기관에 의뢰하여 작업환경을 측정토록 하여야 한다.

	<b>안전.보건관리 PROCESS</b>	문서번호	VSMP3-1
	안전,보건관리 규정		개정일자 2023.04.03
		개정번호 3	폐이지 10 / 14

(2) 작업환경측정은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되 환경안전팀은 해당되는 작업부분에 대한 측정결과표는 전달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 5.8.5.2 측정결과의 조치

- (1) 작업환경측정결과 허용기준 이상일 경우 즉시 당해 작업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의 설치·개선 등에 필요한 조치를 환경안전팀에게 요청 하여야 한다.
- (2)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부터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5.8.6 유해물 표시

유해물질 취급 작업장에는 작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 5.8.6.1 제품명

##### 5.8.6.2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 5.8.6.3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 5.8.6.4 적절한 보호구

##### 5.8.6.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 5.8.7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5.8.7.1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수입·사용·운반 또는 저장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자료를 작성하여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

- (1) 화학물질의 명칭·성분 및 함유량
- (2)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 (3)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 (4)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5.8.7.2 사업장은 전항에 의한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고,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5.8.8 보건수칙

제47조의 유해물질 취급 부서장은 작업자의 안전 및 건강유지에 필요한 수칙을 제정하여 게시하고 작업자는 이를 준수토록 해야 한다.

#### 5.8.9 보호구착용 작업등

5.8.9.1 사업장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호구를 지급해야 하는 작업장과 지급해야 할 보호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추락의 위험을 느낄 때의 작업: 안전모, 안전화, 고소 작업대 등
- (2) 유기용제 취급 작업: 방독마스크, 앞치마, 보안경, 방진필터 등
- (3) 중량물 취급시의 작업: 안전화 등
- (4) 기타 관리감독자가 보호구 착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작업

5.8.9.2 보호구의 지급 기준은 과거의 소모 실적과 작업의 강도를 고려하여 지급주기를 정하여 소요량을 구매, 작업장 별로 작업인원수 이상의 수량을 지급 착용하도록 하되, 반드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한 안전인증에 합격한 보호구를 구매하여야 한다.

	<b>안전.보건관리 PROCESS</b>	문서번호	VSMP3-1
	안전,보건관리 규정		개정일자 2023.04.03
		개정번호 3	폐 이 지 11 / 14

5.8.9.3 모든 직원은 작업 중 지급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목적 외에 타 용도 사용을 금한다.

5.8.9.4 보호구 관리는 팀별로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팀장 책임 하에 관리토록 한다.

5.8.9.5 안전보건팀장은 보호구를 항상 사용 가능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검사, 보수 및 폐기처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5.8.9.6 지급된 보호구는 해당 부서장의 허가 없이는 분해, 변경, 개조하여서는 안 된다.

#### 5.8.10 작업복

5.8.10.1 사업장은 작업장 근무자에게 계절별로 작업모 및 작업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지급하여야 한다.

5.8.10.2 모든 직원은 작업 중에는 규정된 작업복 이외는 착용할 수 없다.

#### 5.8.11 보건기준

5.8.11.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기초로 하여 작업장의 조명, 정리, 정돈, 청소, 습도, 환기, 유해물질 취급 등에 관한 보건기준을 별도로 제정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5.8.11.2 보건관리자는 전항의 보건기준을 기초로 작업자의 건강상 특히 필요한 곳에는 보건수칙을 제정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5.8.11.3 보건수칙은 관계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작업자는 보건수칙을 숙지 준수하여야 한다.

### 6.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 6.1 재해발생시 처리 절차

6.1.1 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작업자의 반장과 목격자는 신속히 안전보건관리자에게 재해발생 사실을 보고하고 필요한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

6.1.2 안전보건관리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사업장 지정 병원에 연락하는 등 사고처리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한다.

#### 6.2 긴급조치

6.2.1 직원이 재해를 당하였을 때에는 동료직원 등 관계자는 즉시 재해자를 재해 정도에 따라 인근 지정 병원 또는 종합병원으로 후송 및 현장에서 인공호흡 등 필요한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

6.2.2 연쇄 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작업장 내의 인원을 대피 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6.3 비상연락망

재해발생시 기동성을 발휘하여 사고에 대한 인명 및 재산의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조직·운영한다.

#### 6.4 사고조사 및 보고

6.4.1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자체 없이 사고현장을 조사하여야 하며 사고지점을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고 조사가 완결되기 전까지 사고현장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6.4.2 안전보건관리자는 재해자가 3일 이상의 휴업을 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이완되었을 시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중대재해 발생 시는 24시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 (1)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 (2) 조치 및 전망

	<b>안전.보건관리 PROCESS</b>	문서번호	VSMP3-1
	안전,보건관리 규정		개정일자 2023.04.03
		개정번호 3	폐 이 지 12 / 14

### (3) 기타 중요한 사항

- 6.4.3 안전보건관리자는 사고현장에 출두하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설 개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6.4.4 사고조사는 "산업재해조사표" 양식에 의거 조사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한다.
- 6.4.5 재해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속한 재해 보상 실시하여야 한다.
- 6.4.6 안전보건관리자는 사고보고서를 작성 비치하고 분석에 따른 통계를 작성 3년간 유지 관리 토록 해야 한다.

### 6.5 재해분석

- 6.5.1 안전보건관리자는 매 분기 중에 발생한 재해 현황을 총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7. 위험성평가

### 7.1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 2에 의거

- 7.1.1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 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7.1.2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 1항에 따라 유해 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조치하는 방법, 절차,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7.2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기록 보존

- 7.2.1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 보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 (4)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7.2.2 사업주는 제 1항에 따른 자료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7.3 이 밖의 위험성평가에 관련된 사항은 VSMP3-2 “위험성평가 절차”에 따른다.

## 8. 상 별

### 8.1 표창

- 8.1.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 실적이 우수한 팀 또는 직원에 대해서는 표창하여 시상함으로써 안전에 대한 동기를 유발토록 한다.
- 8.1.2 표창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안전·보건 제안이 채택된 자
  - (2) 안전보건활동이 우수한 팀 및 개인
  - (3) 안전업무처리에 공적이 현저한자

### 8.2 정계

- 8.2.1 법과 법이 정한 명령이나 본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사업장에 불이익을 초래한

	<b>안전.보건관리 PROCESS</b>	문서번호	VSMP3-1
	안전,보건관리 규정		개정일자 2023.04.03
		개정번호 3	폐 이 지 13 / 14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위원회에 회부 징계 조치하여야 한다.

8.2.2 징계 요구 대상은 다음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 (1)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관리상의 지시, 명령에 위반하거나 불복한자
- (2) 각종 재해 사고의 은폐, 허위보고, 태만으로 안전사고 사후처리를 지연 시킨 자
- (3) 기타 관리감독자 및 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하여 사업장에 손해를 끼친 자

8.3 상벌평가 기준

8.3.1 표창 또는 징계 요구 시의 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재해율, 도수율, 강도율 및 손실금액
- (2) 안전진단결과 및 시정 실적
- (3) 직원의 참여 의식 및 이행 상태
- (4) 안전수칙 실천 상태, 교육 및 안전 활동
- (5)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8.3.2 징계의 종류 및 절차는 사내 상벌 규정에 따른다.

## 9. 안전보건 제안

전 직원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방안을 항상 연구하고 제안을 매 분기 1회 이상 해당부서 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1 승인 및 협의

9.1.1 현장 작업에서 유해·위험성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자 할 경우에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반장을 경유, 안전보건관리자에게 승인을 받은 후 작업을 해야 한다.

- (1) 화재가 우려되는 작업
- (2) 유해물질의 접촉 및 누출의 위험이 있는 작업
- (3) 소방 및 안전시설과 장치의 해체 또는 기능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 작업등

9.1.2 현장 작업에서 작업장 안전수칙 변경 시에는 사전에 안전보건관리자와 협의하여 안전관계 법규상의 적절성 여부를 확인 후 시행하여야 한다.

9.2 문서기록 보존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한 모든 기록의 보존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보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9.3 규정의 개정 등

9.4.1 본 규정의 개정 사유 발생 시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해당시)

9.4.2 사업장 내 모든 임직원은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9.4.3 본 규정은 팀 내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전 직원이 알게 하여야 한다.

## 10. 관련양식 및 기록관리

No	양식 및 기록명	양식번호	보존기간	작성팀
1	사용양식류 없음			

## 11. 관련규정 및 지침

11.1 법규관리 규정 : VSMP3-3

11.2 인적자원관리 규정 : VSSP1-1

11.3 모니터링 및 준수평가 규정 : VSMP3-6

	<b>안전.보건관리 PROCESS</b>	문서번호	VSMP3-1
	안전,보건관리 규정		개정일자 2023.04.03
		개정번호 3	폐 이 지 14 / 14

- 11.4 위험성평가 관리 규정 : VSMP3-2
- 11.5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 지침서 : FVSMP3-1-1
- 11.6 건강진단실시 지침서 : VSMP3-1-2
- 11.7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지침서 : VSMP3-1-3
- 11.8 직무스트레스 프로그램 지침서 : VSMP3-1-8
- 11.9 산업재해조사활동 지침서 : VSMP3-1-4
- 11.10 응급처치 지침서 : VSMP3-1-5
- 11.11 아차사고관리 지침서 : VSMP3-1-6
- 11.12 뇌심혈관질환 예방프로그램 지침서 : VSMP3-1-9
- 11.13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관리 지침서: VSMP3-1-10
- 11.13 안전보건 관리 PROCESS : VSMP3